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공공분양 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751-88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공공분양주택		비규제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1.06.17.)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실질적 전매 가능함		3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2.05.(목)	24.12.10.(화)	24.12.11.(수)	24.12.16.(월)	24.12.19.(목)	24.12.30.(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 이 종료 되었으므로, 영종 서한이다음 홈페이지(http://www.yj-seohan.co.kr/)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 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현존(단지여건, 세대 내부상태, 마감재 등) 상태 그대로 공급받아야 하며, 평면도 및 추가선택품목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mark>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5.(목)</mark>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입니다. (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청약자 본 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mark>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mark>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 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			Χ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 동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 반자), 동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 및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유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5.(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75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387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 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mark>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mark>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 거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앙)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청약 신청 불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접수 일반공급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2.10.(화)	24.12.11.(수)	24.12.16.(월)	24.12.19.(목)	24.12.30.(월)
방 법		약홈(09:00 ~ 17:30) 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영종하늘도시 서한이다 (주소: 인천시 중·	음 단지 내 상가 106호 구 중산동 1889-1)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타주택 등에 당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 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금회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	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예비신혼부부 제외)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	21.06.17.)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실질적 전매 가능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서한이다음 A-42BL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2층~29층 9개동 총 930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7세대 [특별공급 4세대(신혼부부 4세대), 일반공급 3세대]

■ **입주예정**: 계약일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그밖의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모델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신혼부부	세대수
	01	064.7600A	64A	64.7600	22.4598	87.2198	4.6502	34.1175	125.9875	44.4515	1	1	-
	02	084.9300B	84B	84.9300	28.6091	113.5391	6.0987	44.7437	164.3815	57.8651	1	1	-
2024930075	03	084.9100C	84C	84.9100	28.7639	113.6739	6.0972	44.7332	164.5043	57.9338	3	2	1
	04	084.9100D	84D	84.9100	28.7439	113.6539	6.0972	44.7332	164.4843	57.9236	2	-	2
					합 계						7	4	3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 (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 X 0.3025 또는 m' ÷ 3.3058)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릿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64A	84B	84C	합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	2	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계약취소주택분에 한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회공급하는 64A, 84B, 84C 타입만 신청가능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동	호		아파트 총 공급금액(원)	계약금(10%)	잔금(90%)	
THE	막답	<u> </u>	호	아파트분양가(A)	추가 부대경비(B)	계(A+B)	계약시	25.02.28.까지
064.7600A	64A	109	1301	286,000,000	9,611,620	295,611,620	29,561,162	266,050,458
084.9300B	84B	109	2205	376,000,000	12,798,370	388,798,370	38,879,837	349,918,533
		101	303	367,000,000	4,859,430	371,859,430	37,185,943	334,673,487
084.9100C	84C	102	1303	373,000,000	8,370,670	381,370,670	38,137,067	343,233,603
		108	1703	376,000,000	12,886,510	388,886,510	38,888,651	349,997,859
084.9100D	84D	103	2303	376,000,000	13,516,020	389,516,020	38,951,602	350,564,418
004.9100D	040	105	1503	370,000,000	12,989,550	382,989,550	38,298,955	344,690,595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금금액에는 최조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산세, 관리비,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동호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T78	나다	으호	T군	888	계약 시	25.02.28.까지	
			발코니확장	7,800,000	780,000	7,020,000	
			거실바닥	748,000	74,800	673,200	
			붙박이장(침실2)	770,000	77,000	693,000	
		109-1301	시스템 에어컨 3개소(거실+안방+침실1)	3,240,000	324,000	2,916,000	
064.7600A	64A		100 1201	우물천정 간접조명	660,000	66,000	594,000
004.7000A	04A		주방특화(벽체)	990,000	99,000	891,000	
				주방특화(오븐)	440,000	44,000	396,000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현관 청정시스템	990,000	99,000	891,000	
			소계	16,628,000	1,662,800	14,965,200	

주택형	타입	동호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구택영	약합	우오		8급급객	계약 시	25.02.28.까지
			발코니 확장	10,620,000	1,062,000	9,558,000
			거실바닥	946,000	94,600	851,400
			시스템 에어컨 5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5)	6,600,000	660,000	5,940,000
084.9300B	084.9300B 84B	109-2205	우물천정 간접조명	990,000	99,000	891,000
			주방특화(벽체)	1,067,000	106,700	960,300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소계	21,213,000	2,121,300	19,091,700
			발코니확장	8,850,000	885,000	7,965,000
			시스템 에어컨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5,830,000	583,000	5,247,000
		101-303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현관 청정시스템	990,000	99,000	891,000
			소계	16,660,000	1,666,000	14,994,000
		102-1303	발코니확장	8,850,000	885,000	7,965,000
			붙박이장(침실1)	1,100,000	110,000	990,000
			시스템 에어컨 3개소(거실+안방+침실1)	4,400,000	440,000	3,960,000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소계	15,340,000	1,534,000	13,806,000
084.9100C	84C		발코니확장	8,850,000	885,000	7,965,000
			거실바닥	1,045,000	104,500	940,500
			붙박이장(침실1)	1,100,000	110,000	990,000
				붙박이장(침실2)	880,000	88,000
			시스템 에어컨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5,830,000	583,000	5,247,000
		108-1703	우물천정 간접조명	990,000	99,000	891,000
			주방특화(벽체)	1,320,000	132,000	1,188,000
			주방특화(식기세척기)	1,320,000	132,000	1,188,000
			주방특화(오븐)	440,000	44,000	396,000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소계	22,765,000	2,276,500	20,488,500
			발코니확장	8,850,000	885,000	7,965,000
			거실바닥	1,045,000	104,500	940,500
			시스템 에어컨 3개소(거실+안방+침실1)	4,400,000	440,000	3,960,000
		103-2303	우물천정 간접조명	990,000	99,000	891,000
00404000	0.45		주방특화(벽체)	1,320,000	132,000	1,188,000
084.9100D	84D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소계	17,595,000	1,759,500	15,835,500
			발코니확장	8,850,000	885,000	7,965,000
		105-1503	현관중문	990,000	99,000	891,000
			소계	9,840,000	984,000	8,856,000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은 해당 동호에 설치된 품목으로 계약 조건의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품목의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공급계약의 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잔금 90% 로 나누어 납부 하며, 잔금 9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mark>잔금납부 마감일인 2025.02.28.</mark>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보유 기준

내용

- 적용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검토대상

4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 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 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5.)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 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丑1>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_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공급	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	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원간의 지	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토지가액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일치하는 경우	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토지	- 「초지법」 주소인 경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 종중소유		함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 건축물가	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	· 선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37.080천원	년수에 ^{[[} 세대가 2	다라 매년 10 대 이상의 지)%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디 나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자동차	37,080전원 이하	자의 보	천용 차량의 경보전법」제	경우	용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1-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		
구분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동차	40,790천원 이하	44,500천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참고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 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5 특별공급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오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0 급기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 제외)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족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서	대구성원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녀(태아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
대상자	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
	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
	별공급 특례)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0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표2>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구분	비율	소득금액					
TE	미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009,01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20,702,986원	22,279,40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원	7,423,620원	7,897,564원	8,606,954원	9,316,344원	10,025,73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5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원	14,022,394원	14,917,621원	16,257,579원	17,597,538원	18,937,49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원	17,321,781원	18,427,649원	20,082,892원	21,738,135원	23,393,378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원	18,146,627원	19,305,156원	21,039,220원	22,773,285원	24,507,349원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 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 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73,5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 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_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_				1 1 1 0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X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7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당첨 이후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시 예비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 바라며 신청자가 제출한 예비 배우자의 내역은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고

7

8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본인 및 배우자)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16.(월) ~ 2024.12.25.(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2.16.(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9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200%만 서류접수를 받으며, 그 외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계약 현황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하단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청약 Home(인터넷 신청)만 가능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ᄁᇀᄓᆯ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공통서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기록대조일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상세발급)	

		0	해외체류 (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상세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발급)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0		확인서(상세)	19세이상 세대원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0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상세발급)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중 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제3자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대리인	0		위임장	해당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신청시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해당 주택에 대한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통보를			소명 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메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u> </u>	금년도 신규취업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 총 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자 영 업 자	신규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 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분양사무소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분양사무소 ② 세무서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w 그비민주의의 내 기가나하다건도시회의 내가 어느 것이 그비민회의 내의 의교나하다건도시회의 내로 되고싶고 의 것이 그비민지/되었고의 팬이노 사트의 어느 것으로 가족싶고 그비민지의 베이지의 사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 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본인	•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0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202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0		ᄌᇚᆮ륟ᆸᄼᅯᆌ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상세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상세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발급)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금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중 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제3자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대리인	0		위임장	해당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신청시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통보를 받은 자		0	소청 사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4.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4.12.16.(월)	24.12.19.(목) 10:00 ~ 16:00	24.12.30.(월) 10:00 ~ 16:00
방 법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http://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음 단지 내 상가 106호 구 중산동 1889-1)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계약서류	비고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전체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ο 5 ^ π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출입국 사실증명원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원일~현재로 지정하여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전체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로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서류 검토 및 검증으로 인해 반드시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취소세대 모집공고일(2024.12.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 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참고사항

■ 유의사항

-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받은 세대의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주택의 최초 계약자가 소송 등에 의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차후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받은 세대의 당첨 및 계약 권한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및 양지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25.02.28.)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은 견본주택 폐관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별도의 견본주택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거주의무 안내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 개시일은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24.05.31.)부터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단,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거주의무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며, 금회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장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파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삼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게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정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준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접제의 부망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접제의 부망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독기로 보증 다른 구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교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광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권리한 경우 8. 무하가건물(충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 및 제3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량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7조제화탕 및 제2조제제3학제 전후 자꾸를 건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으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용지역 보충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1. 추위가건물(부탁 제2조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주택공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주택공리 신청자가 입장으로 제구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장에 가장으로 전략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 등 목반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관은 3억원) 이하일 것은 다양으로서 기본 보안된 전환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 등 폭행 건물을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관은 3억원) 이하일 것은 다양으로서 그 취득하면 경우 전략이 전략에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관은 3억원) 이하일 것은 보다 전략에 본관되었다면 존재되었다면 전략에 가격을 받는 1세대 전략으로 제3적의 기환으로 보다 1세대 보다 전략 전략 기관 전략에 기관하는 제3조로 위략이 2차 목반으로 가격을 받으면 기관하는 제3조로 기관하는 전략에 기관하면 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및 영종하늘도시 서한이다음 홈페이지(http://www.yj-seohan.c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 분양문의 : 032-751-8800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